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[별지 제27호서식] <개정 2023. 6. 23.>

[] 수거

미승인 소방용품등 [] 교체 표지

[] 폐기

위 치:

소 유 자:

품 명:

수 량:

귀하가 소유・관리・점유하고 있는 (형식승인을 받지 않은,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,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) 소방용품은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7항 및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거(교체・폐기)명령을 받은 소방용품입니다.

누구든지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됩니다.

년 월 일

소방청장・소방본부장・소방서장 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(150g/㎡)]